

호남제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호남제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이라 한다.

<내용변경 2023.12.15.>

제2조(용어의 정의)

‘학생생활규정’ 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1. “학생” 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 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 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교육” 이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학생이 일상의 전반에서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5. “조언” 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 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든 소통 활동을 말한다.
7. “주의” 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 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 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 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권 우호적 학교문화, 교육공동체 합의에 의한 교육활동으로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있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변경 2023.12.15.>

제4조(근거법령)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호남제일고등학교 규칙」 등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신설 2023.12.15.>

제5조(생활교육의 범위 및 방식)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고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이 학생생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제6조(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3.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을 존중하고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게 대한 인권 존중
 - 나.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 다.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게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금지
 - 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 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교육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 바. 흥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4. 학교의 장(“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및 법인” 등을 포함)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교육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6.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교육을 위하여 시설, 인력 등 모든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7. 학교의 장은 교원의 상담 활동에 필요한 상담시설을 구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담 활동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8. 교원은 상담을 위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습득·유지하기 위해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9.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교육을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신설 2023.12.15.>

제7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와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

<내용변경 2023.12.15.>

제8조(기본행동)

1.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3. 학생은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4. 학생은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5.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6.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7.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8.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9.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교사와 학부모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신설 2023.12.15.>

제9조(수업 태도)

1. 학생은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2. 학생은 교원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3.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4. 학생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 화장실 이용이 꼭 필요할 때는 교원에게 허락을 받는다.
5.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6. 학생은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7.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8.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내용변경 2023.12.15.>

제10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1. 학교의 장과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보장한다. 다만,

- 필요할 경우 최소의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2. 학생은 휴식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 3. 학생은 휴식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실, 도서실 등의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지킨다.
- 4.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가지 않는다. 외출이나 조퇴를 할 경우, 반드시 담임교사가 발급하는 외출(조퇴)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임교사 부재 시에는 다른 교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다.

<내용변경 2023.12.15.>

제11조(복장 및 용모)

학생은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으나 타인의 권리 및 성장기에 있는 학생 개개인의 인격의 보호와 더불어 개인적 편차에 의한 우월감과 소외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며, 제시되지 않은 조항은 학생부 지침에 따른다.

1. 복장

- 가. 교복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으로 구분하고 이를 혼용해서 입지 않는다.
- 나. 교복의 모양을 무단으로 변형하는 것을 금하며, 등하교 시 동복 또는 하복과 운동화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천 시 운동화는 예외로 한다.
- 다. 등교 후 교복 이외의 복장은 불허하고, 필요 시 체육복 착용이 가능하다.
- 라. 동복, 하복 착용 기간은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을 강제하지 않는다.
- 마. 학생은 패딩이나 코트 등의 방한 의류를 입을 수 있다.
- 바. 여학생은 교복 하의로 치마나 바지를 선택 착용할 수 있다.
- 사. 명찰은 학년별로 색상을 달리하며 탈부착이 가능한 아크릴 명찰로 한다.

2. 용모

- 가. 학생은 용모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신, 피어싱, 염색, 색조화장, 네일아트, 귀금속류는 하지 않는다.
- 나. 학생은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품을 착용하지 않는다.

<내용변경 2023.12.15.>

제12조(시설이용 및 환경)

- 1. 학생은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 2. 학생은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 3. 학생은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한다.
- 4. 학생은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내용변경 2023.12.15.>

제13조(개인 소유물)

1.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2. 학생이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훼손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혔을 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23.12.15.>

제14조(소지·사용 금지 물품)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각호의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 가. 소지 금지 물품
 -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 5) 인권침해, 혐오표현, 폭력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 6)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 8)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
 - 나.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 1)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 라 한다)
 - 2) 과도한 소음 등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치 등

<신설 2023.12.15.>

제15조(소지 물품 조사)

1. 제14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은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2. 교원이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3. 교원은 소지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예: 공개된 장소에서의 검사, 학생 가방을 뒤집어 흔들어 쏟아내는 행위 등)

<신설 2023.12.15.>

제16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1.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2.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3.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붙임2와 같다.

<내용변경 2023.12.15.>

제17조(전자기기 사용)

1. 휴대전화는 등교 후 조회시간을 이용하여 학교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보관함에 보관한 후에 종례시간에 반환한다. 단, 학습 용도의 인터넷 활용 및 긴급한 경우 해당 시간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2. 학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목적 및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제18조(정보통신 윤리)

1.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2. 학생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학생은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유해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4.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5. 학생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신설 2023.12.15.>

제19조(보건 및 안전)

1. 학생은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4. 학생은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 포함)에 참여할 때 지도 교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5.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안전계획에 제시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

<신설 2023.12.15.>

제20조(인성 및 대인관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학생으로서 바른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을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 예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학생들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사이버 공간을 포함한다) 등 의사소통 행위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생의 부적절한 행위 및 태도 등을 지도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간의 갈등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교폭력이라 하더라도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등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생활교육을 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교육만으로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사항은 관계기관 연계 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2.15.>

제21조(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가.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라.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2. 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에 따른 요건, 분리기간과 장소, 방법은 **붙임1**과 같다.

<신설 2023.12.15.>

제22조(생활교육 불응시 조치)

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 제2장(학생생활교육)의 생활교육에 대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교원의 요청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제23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구를 이용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여 체벌
3. 반복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신설 2023.12.15.>

제24조(교육적 조치)

1. 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2.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각 호와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가.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나.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다. 고정된 자세로 일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 라. 적절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마. 적절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바.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사. 교실 밖 분리(안전생활부실 이동) 조치
 - 아.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자.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3. 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제25조(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1.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2.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가.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나.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다.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내용변경 2023.12.15.>

제26조(음주 및 흡연 행위)

1. 학생의 교내·외 음주와 흡연을 절대 금한다.
2. 교내에서 술과 담배 및 라이터 소지는 음주와 흡연으로 간주한다.
3. 흡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가. 1회 적발 시 : 행동성찰문 작성과 교내 봉사 활동 5일 5시간 (1일 1시간) 및 상담실 상담
 - 나. 2회 적발 시 : 행동성찰문 작성과 교내 봉사 활동 3주 (1일 1시간), 흡연예방 집단 프로그램 참여, 부모 소환 알림장 발송
 - 다. 3회 적발 시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라. 흡연과 관련된 적발 횟수는 재학기간 전체 누계하여 지도한다.

<신설 2023.12.15.>

제27조(이의제기)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내용변경 2023.12.15.>

제28조(양성평등 및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1. 남녀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2.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3.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5.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6. 교내에서 지나친 행동(스킨십 등)의 이성교제는 하지 않도록 한다.

제29조(동아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동아리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내용변경 2023.12.15.>

제30조(학급 내 주변활동)

학생의 학급 내 주변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비품 정리 정돈, 실내 청소,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2.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3. 학급 내 봉사활동 사항 및 기타 내용은 담임교사의 결정에 따른다.
4.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5. 소정의 등교시간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신설 2023.12.15.>

제31조(회복적 생활교육)

1. 1단계 지도 - 담임교사 상담·훈계

문제 행동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021.11.12. 수정>
조치 방법·내용	상담과 훈계를 통한 재발 방지 약속
담당	담임 및 교과담당 교사

2. 2단계 지도 - 학년부 지도

문제 행동	1단계 지도 후, 개선이 되지 않았을 경우
조치 방법·내용	상담과 자기성찰문·행동이행서약서 작성 등
담당	담임 및 학년부 교사

3. 3단계 지도 - 학생부 지도

문제 행동	개선되지 않는 문제 행동, 2단계 지도에 불응 또는 개선되지 않는 경우
조치 방법·내용	학생 상담 및 학부형 내교 면담, 인성·소양 교육 실시 등
담당	학생안전자치부장 및 생활지도 담당교사 <2021.11.12. 수정>

가. 학생부의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주제	내용
소양교육	자기성찰문 쓰기, 자기 다짐 서약서
인성교육	명언 쓰기, 인성관련 영상 보고 감상문 쓰기, 변화를 위한 나의 일정표 짜기
특강	교육 비디오 시청, 준법의식 관련 강의 듣기, 교정행동계획 세우기
예절교육	인사하기 캠페인, 부모님, 선생님께 편지쓰기
봉사활동	교내 환경미화
열정배양활동	사제동행등산 활동

나. 1호의 프로그램 외에, 교육적 상황에 알맞은 별도 프로그램을 학생부장 및 생활지도 담당 교사, 담임교사 등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4단계 지도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문제 행동	개선의지가 없는 행동, 3단계 지도에 불응 또는 개선되지 않는 경우
조치 방법·내용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징계(학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 정지, 퇴학 등)
담당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내용변경 2023.12.15.>

제32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 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이려고 할 때. 단, 학생 전용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교실에 들어가 홍보 활동을 하고자 할 때

<내용변경 2023.12.15.>

제33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교통도덕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 및 소지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9.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동력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포함), 오토바이(원동기,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자동차의 운전을 엄격히 금한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운전면허증(원동기 면허증 포함)을 소지한 경우 허용한다.

<내용변경 2023.12.15.>

제34조(출결사항)

학생의 결석, 결과, 지각 조퇴를 방지하고 성실한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결 지도 규정을 둔다.

1. 외출이나 조퇴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교사가 발급하는 외출(조퇴)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임교사 부재 시에는 다른 교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다.
2. 무단 외출, 종례 시 무단 불참자는 무단 결과 1회로 간주한다.
3. 무단 외출, 무단 결과,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무단결석 등의 누계가 10회 이상인 경우 학급 담임은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고 학생부에서는 학부모 내교 조치 및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소년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한다.
4. 위 3항의 누계가 20회 이상인 경우 학급 담임은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고 학생부에서는 학부모 내교 조치 및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소년도위원회를 열어 징계(사회봉사 3~9일)를 결정 한다.

제3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신설 2023.12.15.>

제35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및 이 규정 제20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12.15.>

제36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학부모 및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12.15.>

제37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가.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5.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12.15.>

제38조(학생 징계)

1.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가. 학교내의 봉사: 5일 1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1일 2시간 이내)
 - 나. 사회봉사: 3-9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다. 특별교육이수: 5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라.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한다.
 - 마. 퇴학처분
2.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 가. 징계 행위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나.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 다.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 라.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 마.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3. 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나.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다.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해야 한다.
 - 라. 제28조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은 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 가. 학교의 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학교의 장이 재심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다. 학교장이 조치 이행 중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등을 고려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2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제3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가.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나.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제40조(징계 경감 및 유보)

1.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 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시험)에 응시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12.15.>

제41조(징계 해제)

학교장은 징계기간 만료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징계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해제 전에 안전생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변경 2023.12.15.>

제42조(징계 기준)

징계 기준은 별도 부록의 “학생생활교육기준”에 의한다.

제4장 학생생활규정 개정

제43조(학생생활규정의 개정)

1.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호남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 나. 관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 다. 그 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교직원협의회의 의결
 - 나. 학부모회의 의결
 - 다. 학생자치회의 의결
 - 라. 제28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
3. 교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교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 학부모, 교

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학생자치회의 회의

나. 학부모회, 학부모회 분과 모임 등의 회의

다. 교직원협의회,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

라. 그 밖에 학교누리집, SNS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제44조(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1.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가.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 나.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 다.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 라.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
 - 마.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홍보
 - 바.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 사.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 아.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대표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6.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가.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9.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0.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

제1절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호남제일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하며 건전한 학풍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는 호남제일고등학교 내에 둔다.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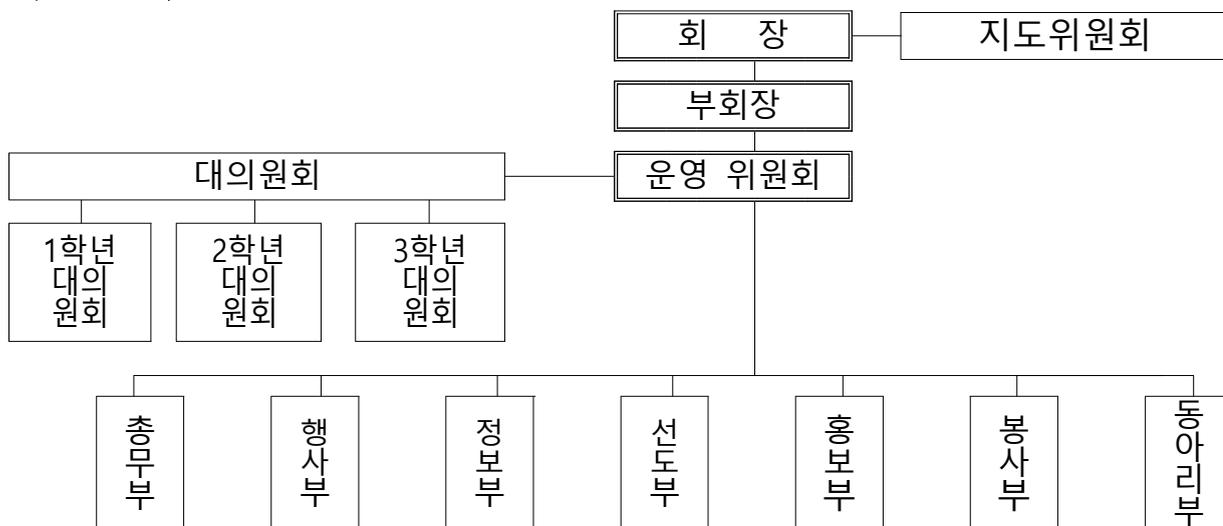
제5조(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금지활동) 본회의 회원은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7조(승인) 학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기구)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회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라 칭한다)와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한다)를 두고 자문을 위해 학생자치회 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도표 조직과 같이 운영하도록 한다.

제9조(조직)



제10조(기능)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

는다.

1. 학예, 보건체육, 취미 및 특기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건전한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
4. 건전한 학생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5. 학교 및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6. 학교축제 및 동아리발표회에 관한 활동
7.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11조(연간 활동계획) 학생자치회가 조직되면 학교의 실정, 학생들의 요구와 실태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의활동과 위원 활동 영역을 균형 있게 연간 활동계획에 반영하여 실천하도록 한다.

1. 협의 활동

- ① 학생자치회 조직 및 임원 선출, 운영
- ② 학교생활의 주요 과제, 공동 관심사 협의
- ③ 학교 단위의 행사계획 수립

2. 위원 활동

- ① 학교생활규칙 실천
- ② 행사 운영 및 봉사활동
- ③ 수련 및 친교활동

3. 운영 방법

- ① 학교 행사 활동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며, 평가, 반성 등 일련의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 현장 학습활동이나 행사활동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실시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학부모, 학생에게 미리 알림으로써 행사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한다.
- ③ 학교 행사 활동 실시 과정에서 교육적인 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평가회를 통하여 행사에 대한 평가 및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 ④ 행사활동은 학생의 능력 수준에 알맞게 전개하여 교육적 의의를 살리고 특별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12조(재정)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3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학생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각 부의 부장 및 차장

제1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자치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5. 특별 활동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15조(부서) 본 회의 활동을 위해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2. 행사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모든 행사 사항
3. 정보부 : 학교 간 학생구성원의 모든 단체와의 긴밀한 연락 및 섭외에 관한 사항
4. 선도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5. 홍보부 : 학교의 모든 사항 및 학생 구성원의 활동에 관한 사항
6. 봉사부 : 학생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환경 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7. 동아리부 : 교내 동아리의 활동 및 구성원의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

제16조(회의)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7조(임원의 역할) 본 회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부 부장은 소속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협의한다.
4. 총무부장은 본 회의 사무를 관리하고, 회의록을 담당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학교장 임명일로부터 차기 총학생회장 임명일까지로 한다. 단,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출 임명)

1. 학생자치회 정·부회장은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규정>에 따라 선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2.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20조(임원의 해임)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 학교장은 학생자치회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징계를 받은 경우
2. 각 부 부장, 차장의 활동이 미진하여 학생회장이 해임을 요청하고 재적 대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 해임 동의 과정을 거친 경우

제3절 대의원회

제21조(구성)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학급의 정·부회장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22조(기능)

1.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 심의·의결 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 ② 학생자치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④ 운영위원회에 위임 및 요구할 사항
 - ⑤ 기타 대의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2. 학년별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각 학년 학급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 ② 각 학년의 중요 행사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제23조(회의)

1.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의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는 매 달 첫째 주 화요일에 소집한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학생인성인권부장의 허락을 받아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지도위원회

제24조(구성 및 운영)

1. 학생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생회지도위원회를 둔다
2. 학생자치회지도위원회는 교감, 학생인성인권부장, 기획, 학생회 담당교사로 구성하며, 교감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25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민주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학생자치회 정·부회장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의 자치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이하 “선거”라 한다)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칭한다)를 두며 선거일 10일 전에 구성한다.
2. 학생자치회장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부부장을 선거관리위원으로 하되 필요시 약간 명을 선거관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자는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없다.
3. 선거관리 위원의 임기는 선거업무 개시일부터 당선자 확정 공고일까지로 한다.
4. 선거관리 위원은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으며 엄정 중립을 유지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권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3.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일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5.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6.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처분
7. 기타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일

제4조(선거 시기 및 선거일 공고)

1. 선거 시기는 여름방학 직전으로 하며 학교장이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선거일은 학생회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라 칭한다)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선거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제5조(선거권) 선거권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있다.

제6조(선거방법)

1. 총학생회장과 2학년 부회장은 런닝메이트로 출마하여 당선됨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학생 투표에서 유권자 1/3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는다.

제7조(입후보 자격)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활동적이고 통솔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학생
3. 교사 2명과 학생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임기 시작 직전 학기부터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학생생활평점제의 별점 10점 미만의 학생
4. 해당 학기 중 사고 결석, 사고 조퇴, 사고결과가 없어야 한다.
5. 전입생의 경우, 전입 후 3개월 이상 재학하여야 한다.

제8조(투표자 명부의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7일전에 투표자 명부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입후보 등록 및 공고)

1.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로부터 7일전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② 교사 및 학생 추천서 각 1부
2. 제1항 제2호의 추천서는 교사 2명과 선거권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여 후보자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심사) 입후보자 등록자에 대한 자격심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학생회 지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11조(등록 무효 및 사퇴)

1. 후보자 등록 후에 제7조의 각호에 미달한 점이 발견된 때 및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운동)

1.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2.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1, 2학년 각 10명 이내의 선거 운동원을 둘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및 선거 운동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심의를 거쳐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① 선거권자에게 금품 제공 및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 ②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 ③ 기타 불법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제13조(벽보 등)

1. 후보자는 지정된 벽보와 피켓 이외에 어떤 선전물도 사용할 수 없다. 단,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2.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와 공약 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 4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벽보를 부착 할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벽보의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양식으로 작성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기호 순으로 부착한다.
5. 후보를 소개하는 피켓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지도위원회에 위촉하여 심의 · 허가한다.

제14조(소견발표회)

1. 후보자는 합동 소견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 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단, 소견발표 시 발표내용을 원고로 작성하여 사전에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에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 소견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표 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한다.
3. 후보자는 선거 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을 순회하며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 때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여 각 후보별로 조정된 일정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제15조(투표)

1.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투표 장소를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투표 참관인을 둘 수 있으며 투표 참관인은 투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개표)

1. 개표는 투표마감 직후 지정된 개표장에서 실시한다.
2.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개표 참관인을 둘 수 있으며, 개표 참관인은 개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①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②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③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 ④ 어느 난에 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 ⑤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제17조(당선자 결정)

1. 개표 결과 회원 재적 2/3 이상의 유효 투표 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동점일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2. 입후보 인원이 단독일 경우 제6조 제2항에 준하고,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생회 대의원회에서 선거규정을 준용하여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명단을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즉시 공고한다.

제18조(재선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며, 2, 3호의 경우에는 2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①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경우
 - ②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 ③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 무효로 결정된 경우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19조(보궐선거)

1. 학생회장 궐위 시는 교사 추천된 학생에 한하여 대의원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2. 학생회부회장, 각 부 부장 및 차장 궐위 시는 학생회장이 제청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대의원회의 동의 과정을 거친다.

제20조(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1. 선거와 당선에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제1항의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의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당선 무효)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당선인, 선거 운동원 및 학부모 등이 제12조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기타)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사무 관련 서류 일체를 학생회 담당 교사에게 인계하며, 학생회 담당 교사는 이를 당선 공고 후 1년간 보관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회지도위원 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3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때는 미리 학생 의견을 듣고 나서 대의원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 할 수 있다.

[학급회 실·부실장 선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급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학급 실·부실장을 민주적인 원칙으로 공정하게 선출, 임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수) 각 학급은 실장 1명, 부실장 1명을 둔다.

제3조(임무)

1. 실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 활동을 총괄한다.
 - 2). 학급의 자치 활동을 통솔하며 명량한 학급 분위기를 조성한다.
 - 3). 학급의 요구 사항이나 의견을 학생회 대의원회에 전달한다.
 - 4). 담임 및 다른 선생님의 지시·전달 사항을 학급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 5). 학급 내 폭력, 절도, 도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우들을 선도한다.
 - 6). 학급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담임 및 담당 선생님에게 신고한다.
 - 7). 학급 생활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통솔한다.
 - 8). 조용하고 원만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 9). 학급 환경을 깨끗이 하고 학급 비품을 관리한다.
2. 부실장은 실장을 보좌하며, 실장 유고시 실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후보 자격) 실·부실장 후보는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임기 시작 직전 학기부터에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2. 직전 학기 중에 사고 결석, 사고 조퇴, 사고 결과가 없어야 한다.
3. 전입생의 경우, 전입 후 3개월 이상 재학하여야 한다.

제5조(선출 방법)

1. 학급회는 선출위원 3명을 선출하여 투표와 개표를 진행한다. 단, 입후보자는 선출위원이 될 수 없다.
2. 후보자 추천은 학생이 하며, 담임교사는 추천된 학생이 제4조 각호의 자격 요건에 부합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도한다.
3. 실·부실장은 본회 회원 전체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4. 입후보자에게는 적절한 순서에 의한 소견 발표의 기회를 부여한다.
5. 부실장을 동시에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 과반수 득표자를 실장, 차점자를 부실장으로 한다. 재적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실장, 차점자를 부실장으로 한다.

제6조(임기)

1. 실·부실장의 임기는 1학기로 한다.
2. 실·부실장이 궐위되거나 해임된 경우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학교장은 정·부회장이 임기 중 제4조 각호를 위반한 경우 해임할 수 있다.

제7조(임명)

1. 담임교사는 학급에서 선출한 실·부실장 명단을 지정된 양식에 의거 학생부에 제출한다.
2. 교감 및 학생인성인권부장은 제4조 각호의 자격요건을 확인한다.
3. 학교장은 실·부실장에 선출된 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8조(임명시기)

1. 1학기 : 신학기 제2주중에 선출하여 제3주 중에 임명한다.
2. 2학기 : 여름방학 종료 직후에 선출하여 신학기 제1주 중에 임명한다.

제9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생회 실·부실장 선출 규정”을 따르며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담임교사의 지도에 따른다.

제10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학생회 대의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결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 중 자리 이탈, 잡담, 소음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 본인 준비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학생 본인 준비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 및 결과 *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기타	* 지각 : 정당한 사유없이 5분 초과하여 들어오는 행위 * 결과 : 정당한 사유없이 수업시간에 들어오지 않는 행위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붙임2.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p>1 제14조 제2항(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p>	<p>수업시간</p>	<p>교실 지정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정규수업 종료 후 : 행동성찰문 작성 후 되돌려줌
<p>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등</p>			
<p>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p>	<p>3일</p>	<p>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p>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도박 등</p>			

붙임 3. [징 계 기 준 표]

구분	항	행 위 내 용	선도 기준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 육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기본행동및 용모	1	기본생활습관 및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			
	2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3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이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	○
	4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통보된 학생			○	○	○
	5	등학교 시 교복과 운동화를 갖추지 않은 학생 (혼용불가, 슬리퍼, 크록스 등 불가) (1회 적발: 담임교사, 2회 적발: 학년부지도, 3회 적발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	○	○	○	○
수업 및 시험	6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7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8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	○
	9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10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근태	11	미인정 결과, 지각, 조퇴가 상습적인 학생	○	○	○		
	12	일과 중 외출증 없이 외출을 한 학생	○	○	○	○	○
	13	미인정결석이 5회 이상인 학생	○	○	○	○	○
	14	무단가출하여 사회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1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10일 이상 미인정결석을 한 학생	○	○	○	○	○
	16	같은 학년 중 미인정 결석이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한 학생					○
약물	17	흡연 및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	○	○
	18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퇴폐 행위	19	도박을 한 학생	○	○	○	○	○
	20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21	불량서적(음란서적)을 소지하거나 탐독한 학생	○	○	○	○	○
	22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23	성과 관련된 그릇된 언행으로 피해를 입힌 학생		○	○	○	○
금품	24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25	금품을 절취, 사취 또는 강탈한 학생		○	○	○	○
집단 행위	26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27	정치 관여 행위 등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	○
정보 통신	28	가상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 학생	○	○	○	○	
	29	음란, 폭력 사이트에 접속한 학생	○	○	○	○	
	30	수업 중 교사의 허가 없이 통신기기를 2회 이상 사용한 경우	○	○			
	31	불건전한 영상물을 제작, 복제 유포한 학생		○	○	○	
기타	32	학교 단체 행사에 상습적으로 불참한 학생	○				
	33	인원 점검 시 대리로 답한 학생	○	○			
	34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35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	○	○	○
	36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	○	○	○	○
	37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38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39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40	징계 중 위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	○
	41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거나 뒷자리에 탑승한 학생 (전동킥보드, 원동기, 자동차, 포함)		○	○	○	○

기타

- ※ 학교폭력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 재학 중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 가중처벌된다.
- ※ 학생의 반성, 생활개선 등의 판단근거를 통해 징계를 가감할 수 있다.
- ※ 학교생활교육기준 이외의 사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붙임 4. 【각종 서식】

[별지서식 1]

학생회장 · 부회장 후보자 추천서

1. 후보자 인적 사항

후보직책	이름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2. 학생 추천

이름	학년반	번호	인(서명)	이름	학년반	번호	인(서명)

202 년 월 일

호남제일고등학교학생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 약 서

본인은 호남제일고등학교 학생회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위원으로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특정 후보를 위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호남제일고등학교선거관리위원 : (인)

호남제일고등학교학생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학생회장 · 부회장 후보자별 참관인 명단

1. 참관인 명단

이름	학번	인(서명)

위 학생을 학생회장 · 부회장 후보의 참관인으로 등록합니다.

20년 월 일

학생회장단 후보 : (인)

(인)

호남제일고등학교학생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사 퇴 서

본인은 202 학년도 학생회(학생회장, 부회장) 후보로 등록하였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202 년 월 일

후보자 : (인)

보호자 : (인)

호남제일고등학교학생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학생 성명		학 번	학년 반 번
분리보관 일시	20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해당 요건	요건		해당 사항에 체크
	1호	수업 종료 후에도 보관하는 물품	
	2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호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호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 학생생활규정 제00조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호남제일고등학교장 귀하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학생 성명		학 번	학년 반 번
분리보관 일시	20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경위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 학생생활규정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분리보관 기간(3일)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호남제일고등학교장

물품 폐기 확인서

학생 성명	
학년/반	학년 반 번
물품 발견 일시	20 년 월 일 시
즉각 폐기 물품	
즉각 폐기 경위	※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 학생 생활규정 제00조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호남제일고등학교장 귀하

일시 분리장소(성찰실) 분리 지도 대장

관리번호 0000-00

일자	20 . . .()		확인(서명)	분리장소 담당자
	내용	교시	수업담당교원	분리사유
1		○○○	·2회 전자기기 무단사용 ·깨워도 계속 누워있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음	10101 안00(5/1,7/5)
특이사항	1. 10101 장00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시간 연장됨을 2교시 교과수업 담당교원에게 알림 2. 10101 장00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행동 성찰문 (성찰하는 글쓰기)			
일 자	20 년 월 일 요일		
학 번	학년 반 번	학생 성명	
※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보세요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20 년 월 일			
확인 교원	성 명		(서명 또는 인)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보호자 확인서

보호자님께

호남제일고등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 실시에 따른 보호자 협조사항 >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예시) :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메일, 출력물 지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SMS(문자메세지)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00-000-0000 (업무담당명, 학교대표 번호이용)

20 년 월 일

호남제일고등학교장 (직인)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20 년 월 일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보호자 성명		(서 명)
보호자 연락처 1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연락처 2		학생과의 관계()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 장소 규칙

※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일 ()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남제일고등학교장

호남제일고등학교 외출 / 조 퇴 증		호남제일고등학교 외출 / 조 퇴 증		호남제일고등학교 외출 / 조 퇴 증	
학 번	학년 반 번	학 번	학년 반 번	학 번	학년 반 번
성 명		성 명		성 명	
사 유		사 유		사 유	
일 시	월 일 시 분	일 시	월 일 시 분	일 시	월 일 시 분
담임교사 명	(인)	담임교사 명	(인)	담임교사 명	(인)
정문 지도 교 사 명	(인)	정문 지도 교 사 명	(인)	정문 지도 교 사 명	(인)
담임교사 보관용 ※학부모와 연락 후 동의하에 교부 가능 ※외출 후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제출		담임교사 보관용 ※학부모와 연락 후 동의하에 교부 가능 ※외출 후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제출		담임교사 보관용 ※학부모와 연락 후 동의하에 교부 가능 ※외출 후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제출	

호남제일고등학교 외출 / 조 퇴 증		호남제일고등학교 외출 / 조 퇴 증		호남제일고등학교 외출 / 조 퇴 증	
학 번	학년 반 번	학 번	학년 반 번	학 번	학년 반 번
성 명		성 명		성 명	
사 유		사 유		사 유	
일 시	월 일 시 분	일 시	월 일 시 분	일 시	월 일 시 분
담임교사 명	(인)	담임교사 명	(인)	담임교사 명	(인)
정문 지도 교 사 명	(인)	정문 지도 교 사 명	(인)	정문 지도 교 사 명	(인)
담임교사 보관용 ※학부모와 연락 후 동의하에 교부 가능 ※외출 후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제출		담임교사 보관용 ※학부모와 연락 후 동의하에 교부 가능 ※외출 후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제출		담임교사 보관용 ※학부모와 연락 후 동의하에 교부 가능 ※외출 후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제출	

호남제일고등학교 외출 / 조 퇴 증		호남제일고등학교 외출 / 조 퇴 증		호남제일고등학교 외출 / 조 퇴 증	
학 번	학년 반 번	학 번	학년 반 번	학 번	학년 반 번
성 명		성 명		성 명	
사 유		사 유		사 유	
일 시	월 일 시 분	일 시	월 일 시 분	일 시	월 일 시 분
담임교사 명	(인)	담임교사 명	(인)	담임교사 명	(인)
정문 지도 교 사 명	(인)	정문 지도 교 사 명	(인)	정문 지도 교 사 명	(인)
담임교사 보관용 ※학부모와 연락 후 동의하에 교부 가능 ※외출 후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제출		담임교사 보관용 ※학부모와 연락 후 동의하에 교부 가능 ※외출 후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제출		담임교사 보관용 ※학부모와 연락 후 동의하에 교부 가능 ※외출 후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제출	